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7189 |
|----------|-------|

발의연월일 : 2026. 3. 3.

발 의 자 : 김 건 · 박충권 · 김기웅  
김석기 · 조은희 · 김미애  
권영세 · 김용태 · 이소희  
이종욱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행업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하며, 국내외를 여행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여행자의 사증 또는 전자여행허가 신청을 대행해주는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고, 일부 대행업체에서 여행자가 해당 서비스가 대행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용을 유도하거나 공식사이트임을 가장하여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여행업자는 사증 또는 전자여행허가 신청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여행자에게 대행서비스임을 고지하

는 등 여행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광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사증 등의 대행) 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사증 또는 사전여행허가(이하 “사증등”이라 한다)를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 이용료·수수료 등 비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여행업자는 인터넷상에서 사증등 발급기관의 사이트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여행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여행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행업자는 해당 여행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서비스 이용료 반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p><u>&lt;신 설&gt;</u></p> | <p><u>제13조의3(사증 등의 대행) 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사증 또는 사전여행허가(이하 “사증등”이라 한다)를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 이용료·수수료 등 비용을 고지하여야 한다.</u></p> <p><u>② 여행업자는 인터넷상에서 사증등 발급기관의 사이트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u>③ 여행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여행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행업자는 해당 여행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서비스 이용료 반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u></p> <p><u>④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방법</u></p> |

|  |                                    |
|--|------------------------------------|
|  | <p>·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